

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

전략 환경영향평가

(평가준비서)

2018. 9



서울특별시
은평구

1.

실시근거

-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.

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	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
	3)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	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자료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2]

2. 계획의 내용

- 계획명 : 폭포동천(가칭) 하천기본계획 및 물푸레골천(가칭) 소하천정비종합계획
- 계획 수립기관 : 서울특별시(지방하천) 및 은평구(소하천)
- 승인기관 : 서울특별시
- 계획의 범위

하천명	등급	위치		연장(km)	비고
		시점	종점		
폭포동천	지방	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9-12	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2-1	3.43	
물푸레골천	소하천	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23-2	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1-30	0.77	

